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8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90404 취득세 등 추가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4. 9.

판 결 선 고 2019.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내역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8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 대도시 내인 [redacted]구 B에서 의류원단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8. 1. 2.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 내지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정한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다음, 2018. 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 2. 5. 본점 소재지를 위 C건물 D호로 변경하였다.

(단위: 원)

부동산	과세표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D호	236,178,409	9,447,130	472,350	944,710	10,864,190
F호	236,178,409	9,447,130	472,350	944,710	10,864,190
G호	236,178,409	9,447,130	472,350	944,710	10,864,190
H호	236,178,409	9,447,130	472,350	944,710	10,864,190
I호	236,178,409	9,447,130	472,350	944,710	10,864,190
E호	476,754,409	19,070,170	953,500	1,907,010	21,930,680
합계		66,305,820	3,315,250	6,630,560	76,251,630

다. 피고는 원고가 대도시인 서울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인 2018. 1. 2. 대도시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2018. 3. 16.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8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앞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자진신고한 세액을 차감하여 [별지 1]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후단은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 중 하나로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을 들고 있다. 여기서 '이후'란 '이제부터 뒤' 또는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하여 그보다 뒤'를 뜻하는 것으로서, '날'이나 '일'과는 전혀 다른 의미인바, 이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민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인 법인 설립일을 산입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다. 만일 민법에 따라 초일인 법인 설립일을 산입하지 않고 위 기간을 계산하면, 법인 설립일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거나, 납세자인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초일을 산입하여 위 기간을 계산하여 보면, 원고는 법인 설립일인 2013. 1. 2. 이후 5년이 경과한 2018. 1. 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8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2)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8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23조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후단에서 정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 이후'를 '~ 날부터' 또는 '~ 일부터'와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규정을 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초일인 법인 설립일은 산입하지 않고, 법인 설립 다음날 오전 영시부터 기산하여 5년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4) 민법 제157조는 기간의 계산, 즉 기간의 종기를 계산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산점을 정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기산점 자체가 곧바로 기간의 시기(始期)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법령의 문언, 내용, 체계,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시기(始期)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① 법인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의 설립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② 법인 설립일에 이루어진 부동산 취득을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③ 만일 법인 설립일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면,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기 위한 위 중과세 규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8

추어 보면,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의 기간의 시기(始期)는 법인 설립을 마친 시점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인 설립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국 원고가 2013. 1. 2. 대도시인 서울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다음날인 2013. 1. 3. 오전 영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인 2018. 1. 2. 대도시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양준

판사 박종환

판사 추진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8

[별지 1]

처분내역

(단위: 원)

구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합계
	9,447,130	1,889,420	1,118,150	12,454,700
	9,447,130	1,889,420	1,118,150	12,454,700
	9,447,130	1,889,420	1,118,150	12,454,700
	9,447,130	1,889,420	1,118,150	12,454,700
	9,447,130	1,889,420	1,118,150	12,454,700
	19,070,170	3,814,030	2,257,130	25,141,330
계	66,305,820	13,261,130	7,847,880	87,414,830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8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8

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